

#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## 심사보고서

2019. 5. 20.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년 5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19년 5월 3일

○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: 2019년 5월 14일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: 2019년 5월 15일

다. 상정일자: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9. 5. 17.)

제230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19. 5. 20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: 복지행정과장 김현기

가. 제안이유

- 2019. 7. 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나. 제출내역

-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### 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폐지

- 기금운용 기한: 2019. 6. 30까지

나. 기금조성액 3,452,249천원은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 
전출 처리(2019. 7. 1.)

(단위: 천원)

합계	용자금			예치금		
	소계	회수시기경과 (채납액)	회수시기미도래 (용자금원금)	소계	정기예금	공금계좌
3,513,269	61,020	7,700	53,320	3,452,249	3,308,423	143,826

다. 기존의 용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 
의 수입으로 처리

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: 24페이지 <4. 전문위원 종합 검토보고> 참고**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**

**6. 토론요지: 없음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**

**9. 기타사항: 없음**